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6,593,761	15,797,813
일반회계	474,226,134	14,226,784
특별회계	52,367,627	1,571,029
공기업특별회계	44,282,676	1,328,480
상수도공기업	19,508,161	585,245
하수도공기업	24,774,515	743,235
기타특별회계	8,084,951	242,549
의료급여기금운영	1,154,845	34,64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02,266	15,068
농공지구조성사업	2,203,727	66,112
공영개발사업	398,709	11,9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222	3,127
수질개선	796,914	23,907
주택사업	2,414,244	72,427
기반시설	18,680	560
장기미집행	491,344	14,7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93,50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